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	발의일자	심 사 경 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한준호의원 (2209056)	2025. 3. 18.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5.07.0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양부남의원 (2212463)	2025. 8. 28.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3.24.)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5.11.12.)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5조)

나.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로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규정함(안 제7조제4항).

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등 시설 점검시 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및 관계 행정기관에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 조치의무를 부과함(안 제12조).

법률 제 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중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 점검과 개선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수립)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 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 점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점검 등) ① ----------. ----------여부와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신 설>	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 점검과 개선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①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1.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